

2026. 7.

**「2026 광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콘텐츠 IP 지역특화 상품개발지원
지정과제 1 참가기업 모집 재공고**

2026. 7.

I 공모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광주 지역특화 자원과 콘텐츠 IP를 연계한 상품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지역 콘텐츠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
- 지역특화 소재·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IP 활용범위를 확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 기반 마련

○ 사업명 : 콘텐츠 IP 지역특화 상품개발지원

○ 접수기간 : 2026. 7. 14.(화) ~ 7. 29.(수) 14:00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콘텐츠 IP를 보유한 광주광역시* 소재 콘텐츠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구)광주광역시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해당(이하 동일)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1. 30.(예정)

※ 협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결과물 제작과 제출을 포함하는 기간

○ 지원범위 : 콘텐츠 IP 활용 상품개발비 지원(인건비, 운영비)

○ 지원규모 : 총 100백만 원(2개 과제 선정)

○ 과제내용

유형	지원규모	과제내용
지정 과제 1	-2개 과제 -각 50백만 원 -국비	◎ 광주공동브랜드 'GIEL' 협력기업 제품과 콘텐츠 IP를 융합한 제품 기획개발 ◎ 지원사업 결과물로서 콜라보 제품의 금형, 목업, 샘플 및 시제품(또는 완성품) 등 과제 목표를 실물로 구현하여 제출 필수 ※ 결과물 제작을 위한 재료비, 가공비 등 직접 제작비는 지원금의 40% 이상 편성 ◎ 신청절차 1) 별첨 참고자료를 통해 협력기업 정보 및 콜라보 대상 제품 확인 2) 희망 제품 선정 후 협력기업과 사전 협의하여 과제 방향 설정 3) 과제신청서 작성 및 공모 신청 ※ 협력기업과 사전 협의 후 협력기업 참여의향서(제출서류 3-2) 제출 필수 ※ 콘텐츠 기업 단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이후 협력기업과 공동 개발을 추진(컨소시엄 불필요) ◎ 콘텐츠 IP 세계관과 콜라보 제품을 연계한 애니메이션, 무빙툰 등 시각화 결과물 제작 필수 ※ 기성품에 단순 프린팅한 결과물은 지양하여야 하며, 제품 신규 기획개발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단순 기획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물 결과물 제작을 목표로 신청하여야 함

II

지원 세부내용

□ 지원자격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공고일(2026. 7. 14.)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콘텐츠 기업

- 지점(종된사업장) 및 사업장 추가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광주광역시 내 별도 법인의 경우 지원 가능하며, 이는 기존 법인과 구분되는 독립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가 별도로 부여된 법인을 의미함

□ 지원 제외 대상

- 동시 수행 과제 제한 적용

- 지정과제 1은 5,000만원 이하 과제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중복지원

- 신청일 현재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타 시도 동일 사업 선정 시 중복 수행 불가하며, 기업은 1개 과제를 선택하여 수행하여야 함

- IP 및 과제 방향성

- 콘텐츠 IP와 지역특화 소재·산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기획 의도 및 상품개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과제
- 콘텐츠 IP와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신규 상품 기획 없이 단순 이미지 적용, 리디자인 또는 반복 제작에 그치는 과제
- 협약기간 내 결과물 구현이 어렵거나 과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과제
- 단순 기념품 제작에 그쳐 차별성 및 확장성이 부족한 과제

- IP 권리 및 적정성

- 협약일 기준 해당 IP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권리관계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
- 활용 IP 또는 제작 결과물이 보편적인 사회윤리를 준수하지 않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활용 IP 또는 제작 결과물에 폭력성·선정성·특정 계층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기타 제한사항(공고 마감일 기준)

- 부동산업 등 비관련 업종은 지원 불가
- 비영리법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은 지원 가능하나,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는 지원 불가
- 대기업은 지원 불가하며, 대기업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공시하는 대기업집단 기준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 및 관리 기관 등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 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신청 기업 및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거나, 보조금 수금의 제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경과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 지원조건(필수사항)

○ 과제 수행 및 결과물

- 협약기간 내 과제신청서에 제시한 상품개발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결과평가 시 해당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및 인력 운영 기준

- 본 사업의 인건비는 광주광역시 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인력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함
-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 불가

○ IP 권리 및 사업화 기준

- 신청기업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콘텐츠 IP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상품 및 결과물의 계약, 유통, 판매 등 사업화 활동은 신청기업 명의로 수행하여야 함
-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상품 및 결과물에 대한 권리관계는 관련 법령 및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명확히 정하여야 함

□ 사업장 유지 의무 및 사후관리

- 본 과제 지원기업은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광주광역시 내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장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진흥원은 필요시 현장점검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함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장 사용권한 증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장 유지 의무기간 내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폐업한 경우
 -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 등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지원금 지급 및 사업관리

- 지급방법 : 협약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및 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지급(60%)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통과 및 지원금 지급(40%)
- ※ 국고보조금 교부현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 및 횟수 변동될 수 있음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제출 필수
 - 선정 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각각 이행보증보험증권 분리하여 발급 필수

구 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지원금의 100%	협약기간 + 90일

【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 】

- 사업비 계좌 관리
 - 사업 수행만을 위한 별도 통장으로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보조금, 기업자부담금 동일 계좌로 관리)
 - 해당 계좌는 기관 명의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보통예금 등의 계좌여야 함

【 국고보조금 - 지정과제 1 해당 】

- 국고보조금 예치 : 국고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되며, 가상계좌를 통해 관리됨
- 상기 계좌와 연동된 전용 사업비 카드 발급하여 집행

III 평가 및 선정

□ 선정절차

○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요건심사(적정성 검토) ⇒ 선정평가(서면·발표) ⇒ 현장점검

모집공고 및 접수 공고일 ~ '26. 7. 29. 14:00	▶	요건심사 (적정성 검토) ~ '26. 7. 31.	▶	선정평가 (서면 및 발표평가) '26. 8. 3.	▶	현장점검 '26. 8. 5.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60%) '26. 8월 중	▶	현장점검 및 진도점검 '26. 8. ~ 11.(상시)	▶	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40%) '26. 9월 중	▶	결과평가 및 정산 '26. 12월 초

※ 상기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접수 결과 4배수 초과 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분리하여 진행될 수 있음

- ① 1차 요건심사(적정성검토) :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지원요건 부합 및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 ② 2차 선정평가(서면·발표) : 제출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기업의 협약 포기 또는 협약 불발 시 차순위 과제와 협약체결 추진

□ 평가기준

○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구분	세부항목		
기업역량	수행능력	○ 유사과제 수행 경험 및 전문성 보유 여부 ○ 참여인력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20
기획·개발 경쟁력	IP 활용 및 상품기획력	○ 기존 IP의 완성도 및 확장 가능성 ○ 지역특화 소재 연계 및 활용 적정성 ○ 기획 상품의 차별성 및 시장 경쟁력 ○ 협업 방향과 추진체계의 구체성 ○ 성과 및 수익 창출 가능성	50
지역 기여도	지역 연계 및 파급효과	○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 지역 산업 및 경제적 파급효과	20
사업비 적정성	예산계획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구체성	10
합계			100

※ 상기 평가항목과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점검 항목

- 사업장 방문 및 참여인력 현황, 사업장의 기술·장비 보유현황 등 종합적으로 확인(주관기업 우선 확인, 참여기업은 현장참여)
- 아래의 점검항목 중 2개 이상 ‘미흡’ 시 탈락

실사항목	등급	평가지표	비고
사업장 보유여부 및 영업 행위	우수	주관기관 제작 관련 사업장 인력보유, 재무제표, 부가세신고 등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보통	사업장 보유, 영업초기의 경우	
	미흡	사업장 미확보	
참여인력확보 및 실제 참여 가능성	우수	신청서의 참여인력과 확보인력 일치	회사 전체 조직도/ 4대보험 가입자명부
	보통	신청서의 참여인력과 확보인력 1~2명 부족	
	미흡	신청서의 참여인력과 확보인력 3명 이상 부족	
상품개발 추진여건 및 사업비 현황	우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상품개발 추진여건 및 사업비 확보 적정	원천자료목록,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
	보통	과제 수행에 필요한 상품개발 추진여건 또는 사업비 확보 일부 부족	
	미흡	과제 수행에 필요한 상품개발 추진여건 또는 사업비 확보 미흡	
제작환경 구축상태	우수	장소, 시설, 비품 등 확보한 경우	장소, 시설, 비품 등 비치 상태
	보통	장소, 시설, 비품 등 일부만 확보한 경우	
	미흡	장소, 시설, 비품 등 확보되지 않은 경우	

□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 예산집행과 수행현황 2개 분야 평가를 통한 잔여 지원금 교부 여부 결정

중간평가 시행		합격	70점 이상		‘보완’기업 재평가 진행	합격	70점 이상
		보완	60~69점			실패	60~69점
		실패	60점 미만				
① 예산편성지침 준수 집행	② 계획대비 사업수행 현황 점검	▶	합격	2차지원금 지급	▶ - 1개월 이내 보완 결과물 기반 재평가 1회에 한함 - 현장점검 병행 가능	▶ - 잔여 지원금 교부	
회계법인 점검 (중간정산)	평가위원회점검 (계획대비 서류검토)	▶	보완	재평가			
		▶	실패	과제 실패 지원금 환수			
결과평가 시행		합격	70점 이상		‘보완’기업 재평가 진행	합격	70점 이상
		보완	60~69점			실패	60~69점
		실패	60점 미만				
① 예산편성지침 준수 집행	②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점검	▶	합격	정산 및 반납 등 사후조치	▶ - 1개월 이내 보완 및 재평가 1회에 한함 - 현장점검 병행 가능	▶ - (합격)정산 및 반납 등 사후조치 - (실패)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회계법인 점검 (집행내역정산)	평가위원회점검 (계획대비 서류검토)	▶	보완	재평가			
		▶	실패	과제 실패 지원금 환수			

※ (현장점검) 기업별 예산 집행 및 수행현황에 따라 필요시 진행

IV 신청절차 및 제출 안내

□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7. 14.(화) ~ 7. 29.(수) 14:00까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신청양식은 e나라도움 및 우리원 홈페이지(<https://www.gicon.or.kr/>) <콘텐츠 IP 지역특화 상품개발지원 지정과제 1 재공고> 공고문 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icon.or.kr/>) 메인메뉴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콘텐츠 IP 지역특화 상품개발지원 지정과제 1 참가기업 모집 재공고’ 공고문 클릭 → 공고문 하단의 ‘사업신청서(양식)’ 클릭 → 양식 다운로드 → 과제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전 e나라도움 사전준비

-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에서  버튼 혹은  버튼 클릭하여 e나라도움으로 이동
- 신규신청자는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 e나라도움 사용법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중앙 상단  클릭하여  탭의 회원가입 및 공모 신청 등 단계별 매뉴얼(보조사업자-예치형) 참고

【 관련 준비사항 】

- (회원가입)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시 개인인증서 필요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10 이상(Mac OS에서는 작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신청서 제출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입력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 첨부파일 업로드 용량은 50mb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의
- 첨부한 신청서류로 평가 진행, e나라도움 접수 시 첨부파일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서 제출 상세 설명 】

① 공모현황 조회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go.kr) 로그인 후 좌측 상단 **공모신청** 탭 클릭
- 혹은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경로를 통해 공모명 조회 가능
- 공모현황 페이지에서 공모명 '콘텐츠 IP 지역특화 상품개발지원 지정과제 1 재공고' 검색

② 신청서 작성

- 본 공고명 선택 후 '신청서작성' 클릭, 시스템 내 사업신청서 양식 입력

③ 신청서 제출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서 제출
- ※ 파일첨부 : 신청서류 번호 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압축파일로(파일명 : 주관기관명_과제명) e나라도움 파일첨부 탭에서 첨부
- ※ 파일첨부 후,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 상단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제출이 완료됨(마감 시간까지 첨부서류가 업로드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취소됨)
- ※ 신청서 최종 제출완료 후 반드시 다시 접속하여 모든 서류가 정상 접수되었는지 확인
- ※ e나라도움 사용법은 e나라도움 매뉴얼에서 보조사업자(예치형) 조회 및 다운로드하여 숙지

○ 신청서 제출 완료 후 작성내용 점검

- e나라도움 시스템 내 '사업신청현황' 메뉴 활용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신청현황')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기한 내 접수가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 2026. 7. 29.(수) 14:00까지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26.7.14.)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공통 (필수)	1 사업신청서	○ 표지 및 신청서 하단 법인인감 날인
	2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수행기관 역량까지 총 30페이지 이내 로 작성
	3-1 수행기업 소개서	○ 주관기업 작성
	3-2 협력기업 참여의향서	○ 지정과제 1 해당
	4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 주관기업 작성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관기업 작성 ○ 참여인력 전원의 자필서명 필수
	6-1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지정양식(엑셀/한글)에 실제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 작성 ※ 개별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최대 5인)에 대하여 작성
	6-2 과제책임자 이력	
	6-3 참여인력 이력	
	6-4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6-5 신규인력 채용계획(해당 시)	
	7 정부지원 수혜실적	○ 주관기업 작성
	8 위탁사업 계획서	○ 해당 시(일반, 관리용역비 편성 시) 작성
붙임 (필수)	9 평가위원 추천표	○ 주관기관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본 제출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소재지 및 등록일자 확인용으로 스캔본 제출
	11 2025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법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발급분)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발급분) ※ 2025년 미결산시 회계법인의 직인 날인된 2025년 가결산분 또는 증빙 가능한 서류제출
	12 고용보험취득자명부 (공고일 기준)	○ 주관기업 제출
	13 콘텐츠 IP 권리관계 증빙서류	○ 콘텐츠 IP 보유 관련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저작권등록증, 특허권, 원저작권자와 계약한 IP 활용 계약서 등
	14 기업 데이터 관리 시트	○ 지정양식(엑셀) 에 작성
별첨	15 선택서류(자유양식)	○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 등 ○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 1) 모든 제출서류를 아래 구성 예시와 같이 순서대로 정리하여 1개의 압축파일(50MB이하)로 제출
- 2)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7z, EGG, ALG, RAR 등 ZIP 외 확장자는 미제출로 간주)
- 3) 제출 압축파일명 :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 4)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5) e나라도움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1~8. (사업신청서) 날인본_주관기관명.pdf 1~8. (사업신청서) 원본_주관기관명.hwp 6-1.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_주관기관명.xls 9. 평가위원 추천표_주관기업명.pdf 10. 사업자등록증_주관기업명.pdf 11. 2025 표준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_주관기업명.pdf 12. 고용보험취득자명부_주관기업명.pdf 13. 콘텐츠 IP 권리관계 증빙서류.pdf 14. 기업 데이터 관리 시트.xls (선택)15. 기타자료(자유양식)
---------------	--

□ 신청 시 유의사항

- 마감시간 이후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관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없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한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홈페이지 : www.gicon.or.kr
- 사업문의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본부 콘텐츠성장팀 김원희 책임
(☎ 062-610-2939 / dnjs@gicon.or.kr)
-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1670-9595)
- [e나라도움 사용자 매뉴얼](#) / [e나라도움 동영상 매뉴얼](#)

□ 협약 및 법령 준수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등을 준용하며, 선정기업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을 준용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사업 수행 관련 사항

- 선정기업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 변경은 불가함
-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함
- 협약기간 내 과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모든 과제는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3자의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권리 확보 및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 사업 종료 후 성과조사 및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정산 관련

- 사업비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비는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토(정산)를 수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 수행기관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관리하여야 함

□ 제재 및 책임사항

-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동일·유사 과제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사업 수행 중단, 협약조건 위반 또는 결과물 미제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주관처의 정당한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협약 종료 이후에도 공고 및 협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사업장 유지, 성과관리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본 공고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및 선정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함

- 과제 결과물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완성 결과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의 CI를 포함하여 본 사업 지원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세부사항은 협약에 따름)
-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관리 및 실적조사 등 관련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서 성과관리 기준에 따라 과거 수행사업에 대한 실적 제출 및 성과조사에 협조하여야 함